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공시 강화 등)

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자기주식 공시의무 위반시 가중조치 근거 마련)

다. 금융투자업규정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 완화)

라. 금융소비자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시스템 이용자 제공 정보 강화)

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25/12/30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등의 공시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 공시를 추가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추가(제4-3조 제1항)

— 직전 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처리현황의 비교 및 중대재해 발생사실 등을 사업보고서등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 반기보고서 첨부서류 추가(제4-3조 제9항)

—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함

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2025/12/30 개정·시행)

1) 개정 이유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2) 주요 내용

- 자기주식 공시의무 위반 시 가중조치 근거 마련(별표 3 제3호)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 위반행위로 조치를 받은 후 2년 내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조치수단 다양화(별표 3 제6호의2)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보유·처분 관련 공시를 위반하여 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세부기준을 마련

다. 금융투자업규정 (2025/12/17 개정 · 2026/1/2 시행)

1) 개정 이유

-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규제개선 절차에 따라 동 규제특례를 공식 제도화하기 위함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계좌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통해 국내 최초의 주식통합계좌 개설 및 투자가 시작

2) 주요 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자구 미비사항 정비(제6-7조 제3항 및 제6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23.6.13.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상의 지칭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정비
- 외국인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 요건 완화(제6-7조 제7항)
 - 주식통합계좌의 개설 주체를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요건 제한을 삭제

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2025/12/1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감독원 비교공시시스템(금융상품한눈에 · 통합연금포털) 이용자 제공 정보 강화 등을 위함

2) 주요 내용

- (금융상품한눈에)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상품 공시 시 '우대금리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시행세칙 [별표2] 비교공시 정보 세부작성요령 4.~5.)
 - 24년 비교공시 시스템 소비자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한 개선사항
-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판매사·연금저축상품(신탁·펀드·보험)을 비교·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 회사별 비교공시 (시행세칙 [별표2] 비교공시 정보 세부작성요령 3. 가.)
 - (공시주체 변경) 상품 제공기관(운용사 등)에서 연금저축 판매사로 변경하여 퇴직연금사업자 공시체계와 일관성 제고
 - (공시항목 정비) 연금저축 판매사의 상품별(신탁·펀드·보험) 적립금 공시 신설 및 정보 효용성이 낮은 수수료율 등 제외
 - 상품별 비교공시 (시행세칙 [별표2] 비교공시 정보 세부작성요령 3. 나.~다.)
 - (수익률 작성기준 개선) 널리 사용되는 '상품 특성별 수익률'로 변경하고 누적연평균 수익률을 추가하여 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
 - (공시대상 확대) 투자수요가 높아진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추가 공시(퇴직연금은 2025년 2분기부터 ETF 공시 시행중)

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5/12/17 제정·시행)

1) 제정 이유

- 금융정책과 감독에 있어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심의·협의체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가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요 내용

- 정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제4조)
 - 위원장(금융위원장) 포함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관계부처 차관급 및 관계 공공기관 임원 등은 당연직으로 구성
 - (정부부처) 재정경제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관계기관)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 민간위원은 경제·소비자·법률 전문가 등을 금융위원장이 위촉
 -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 정책평가위원회의 업무(제5조)

-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정책, 서민(청년)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시

□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6조)

- 정책평가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 매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 가능

□ 소위원회의 업무(제7조)

- 금융소비자·서민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

선임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